

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31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2

다. 상 정 일 자 : 제59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4차 총무사회위원회(97. 6. 20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)

### 가. 제안이유

제1회 지방고시합격자(지방환경 5급)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 
증원코자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(현 780 ⇒ 조정 781명)

- 구 본청직원 : (현) 454명 ⇒ (조정) 455명 ▷ 증1명
- 의회사무국 18, 보건소 46, 동 262명 : 변동사항 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배치된 제1회 지방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기간이  
끝남에 따라 신규임용하여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케 하기 위한 사항이며  
부칙에 97. 4. 1부터 소급적용토록한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소급적  
용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닌 만큼 본 조례개정에는 별도의  
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## 4. 결의답변요지 : 생 략

## 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